

15. 위임전결 규정

제정일 : 2007년 9월 12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문서결재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처리에 있어서 신속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교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위임전결사항) ① 각 기관의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은 [\[별표 : xls 형식\]](#)와 같다.
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정도에 따라 전항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.

제4조(권한과 책임)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5조(예외사항) ①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.
②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상위자의 지침이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.
③ 위임전결 사항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 지극히 경미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것은 위임 전결할 수 있다.

제6조(합의) 위임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상호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,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쌍방의 동일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

제7조(대행) 전결권자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시행 명의) ①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대외관계와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 또는 상위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직인 관리부서에서 기록하여 그 시행 명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고) 전결 처리한 사항중 업무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07년 9월 12일로 시행한다.